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26회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18. 11. 30 (금)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검토보고자 : 전문위원 이주현)

1. 회부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18. 11. 19
- 회부일 : 2018. 11. 20 (의안번호 : 18-123)

2. 제출이유

청소년을 보호하고 춤 허용 일반음식점의 절제있고 건전한
영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위함

3.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50m)내 춤 허용 업소 지정 제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①·② (생략) <신설>	제5조(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더라도 영 업장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 대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경우에는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로 지정하여 서는 아니 된다.

나. 출허용 업소 취소후 재지정 신청기한 제한(6개월)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행정처분 등) (생 략) <신 설>	제10조(행정처분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행정처분으로 <u>출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 된 영업장소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출 허용업소 지정을 할 수 없다.</u>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별표 17(7항, 타목, 7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 보호구역 설정 등)제1항
-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2018.10.18~11.7)
- 부패영향 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성별 영향분석 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여부

- 이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지정 및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여 올바른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 한편, 당초 이건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인 식품위생법이 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허가 등을 통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리와 자유를 해제하는 법률이라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이건 조례의 개정에 따라 권익을 보호받는 주민과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의 이익을 고려하는 등 공익과 사익을 신중하게 비교형량 판단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이건 조례 제정의 법률적 배경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의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의 “별표17”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한편, 단서조항으로 “다만, 시군군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마포지역 일반음식점에서도 춤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1, 2참조)

다. 개정 조례안 조문별 내용검토

○ 제5조(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제3항의 신설

현행	개정안
<p>제5조(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p> <p>① 영업자가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춤 허용업소 지정(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5.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서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5조(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p> <p>①·② : 현행과 같음</p> <p>③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더라도 영업장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경우에는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검토내용 : 춤 허용업소 지정을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절대보호구역” 밖의 지역으로 제한함

○ 제10조(행정처분 등) 제2항의 신설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행정처분 등) 춤 허용업소가 제7조에서 규정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는 개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고,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89조 별표 23, II.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며, 지정취소를 받은 영업자는 즉시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p>	<p>제5조(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p> <p>① 항 : 현행과 같음</p> <p>② 행정처분으로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된 영업장소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할 수 없다.</p>

- 검토내용 :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될 경우 6개월 이내에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

- 타 시군구 사례

부산 진구	울산 중구	서대문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재 지정 제한기간 없음			6개월 제한	1년 제한

※ 우리구 포함 전국 5개 시군구가 조례를 제정하고 2개 기관에서 지정 취소후 재지정 제한기간을 규정하였음

라. 검토 종합의견

○ 위와 같이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조례 제정의 법률적 배경, 및 개정 조례안 조문별 검토 등 종합적 검토한 결과, 당초 젊은이의 놀거리 볼거리 제공 등 흥대상권 활성화라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이견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지정 및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여 올바른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공익과 사익을 상호 신중히 비교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이견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18.10.18일부터 1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참고자료

1.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 ※ 별표17 : 7항, 타목 7호 포함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 ※ 별표23 : II. 개별기준의 157항 포함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 보호구역의 설정 등)
5. 개정전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참고자료 1]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5.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수입·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6.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7. 손님을 피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을 유혹接客원으로 고용하여 유혹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혹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혹을 돋우는接客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혹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자료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개정 2018. 6. 28.>

식품접객영업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참고자료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8. 6. 28.>

행정처분 기준 (제89조 관련)

II. 개별기준

위반 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과 별표 17 제7호자목·머목은 제외한다)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참고자료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환경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1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 인가가 취소된 때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참고자료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2. 19.]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033호, 2015. 12. 31., 제정]

마포구 (위생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춤 허용업소”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신고 된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용한 업소를 말한다.
2.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영업장 내에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춤 허용업소의 지정에 따른 사항은 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춤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받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① 영업자가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춤 허용업소 지정(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5.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서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변경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제5조의 신청절차에 따른다.

1. 영업자
2. 영업소 명칭
3. 영업소 소재지

4. 영업장 면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 내용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출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① 출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장내 손님들이 출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할 것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받은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4.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서 정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할 것
5. 비상구는 상시 개방되어 있을 것
6. 영업장내 입장인원을 객석면적 1㎡당 1명으로 제한 할 것
7. 안전요원은 영업장면적 100㎡이하는 1명 이상 고정배치하고, 영업장면적 100㎡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것
8. 정전이 있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조명등을 출입구와 비상구에 각각 2개, 객석방향에 4개 이상 설치할 것
9.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벽면 5m당 2개 묶음 1개씩 설치할 것
10. 화재용 방독면 또는 휴대용 방독면을 업소 내에 분산비치하고, 벽면 3m당 2개씩 설치할 것
11. 용량 3.3kg 소화기를 영업장내 벽면 5m당 1개씩 설치할 것

제8조(출 허용업소의 출 허용 시간) 출 허용업소에서 손님이 출을 출 수 있는 시간은 해당 업소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제9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출 허용업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처분 등) 출 허용업소가 제7조에서 규정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는 개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고,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출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며, 지정취소를 받은 영업자는 즉시 출 허용업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조례 제1033호, 2015.12.31>

이 조례는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